

이승은 장학금 운영 규정

제 정 : 2014. 7. 21.
개 정 : 2025. 8. 1.
개 정 : 2025. 8. 1.
개 정 : 2026. 9. 22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장학금은 기부자 지길순(이하 기부자)님이 기부약정에 따라 금강대학교에 기부한 일금 일십억원(₩1,000,000,000)과 이자수익을 기금(이하 장학기금)으로 하여 이승은님의 금강대학교를 통한 불교 발전을 지원하는 뜻에 따라 금강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불교학 및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6. 9. 22.>

제2조(명칭) 본 장학금은 “이승은 장학금(이하 장학금)” 이라 한다.

제3조(사업)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
1. 장학금의 지급<개정 2026. 9. 22.>
2. 불교학 및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할 재학생의 학업장려<신설 2026. 9. 22.>
3. 기타 본 장학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장학사업<신설 2026. 9. 22.>

제2장 장학생선발위원회

제4조(장학생선발위원회) ① 제1조의 목적과 제3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26. 9. 22.>

② 위원회는 총장, 대학원장, 기획관리처장, 교학지원처장, 학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장학기금의 지정 목적과 기부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장 및 기증자 1인 또는 기증자가 추천하는 1인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.<개정 2025. 8. 1, 2026. 9. 22.>

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교학지원처장이 된다. 다만,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26. 9. 22.>

④ 기증자 또는 기증자가 추천하는 위원은 장학금의 설립 취지와 지정 목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다만, 장학생 개인의 최종 선발 및 지급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신설 2026. 9. 22.>

⑤ 위원회에서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장학업무 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.<신설 2026. 9. 22.>

⑥ 위원 본인 또는 친족, 이해관계인이 장학생 후보자와 관련된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신설 2026. 9. 22.>

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
2.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
3. 지급액의 책정기준 및 배정심사에 관한 사항
4.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연구에 관한 사항
5. 본 장학금 운영 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 <개정 2026. 9. 22.>
6.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

제6조 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 단,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 9. 22.>
② 심의사항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3장 장학금신청자격 및 장학생선발

제7조 (장학생의 자격제한) 본 장학금의 장학생 자격제한은 금강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제3장 제8조(장학생의 자격제한)로 한다.

제8조 (장학생선발) ① 본 장학금 수혜자는 지급시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. <개정 2026. 9. 22.>
② <삭제 2026. 9. 22.>
③ 위원회는 제1항의 기준 외에도 학교의 위상 제고, 불교학 및 불교문화 발전에 대한 기여도, 품행, 장래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. <신설 2026. 9. 22.>

제9조 (장학생 확정 및 공고) ① 교학지원처장은 장학생선발위원회 심의 · 의결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 9. 22.>
② 장학생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.<신설 2026. 9. 22.>
③ 장학생 확정, 장학증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금강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제4장 제11조 및 제13조에 준하여 시행한다. <신설 2026. 9. 22.>

제4장 장학금 재원 및 지급

제10조 (장학금 재원 및 지급) ① 본 장학금의 재원은 기부원금의 운용수익 및 이자수익으로 하며, 기부원금은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26. 9. 22.>
② <삭제 2026. 9. 22.>
③ 금강대학교 내·외부장학금과의 중복수혜는 인정한다.
④ 학교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 명단과 지급 내역을 기탁자에게 통보한다.
⑤ 기부원금 및 그 운용수익은 기부약정, 관련 법령 및 학교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. 다만, 장학금의 지급은 학교의 장학사업 목적에 맞게 교비회계 또는 관련 장학금 계정에서 집행한다.<신설 2026. 9. 22.>

제5장 기타사항

제11조 (장학관리) 본 장학업무는 교학지원처에서 관장하며 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기획관리처 경영지원팀에서 지원한다. <개정 2025. 8. 1.>

제12조 (기타사항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생선발위원회 심의 · 의결을 통하여 금강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.<개정 2026. 9. 22.>

부 칙

이 제정 규정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26년 9월 22일부터 적용한다.